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주식회사 **누보** (이하 “회사” 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 라 함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 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 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계정” 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 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회사” 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7. “관계회사” 라 함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와 해당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목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 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 ②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89, 5-102호(서둔동,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에 둔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해당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 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①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1항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회사를 인수한 경우 조합원이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으로 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상황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정기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원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관계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장)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③ 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이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손실보전거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예탁 우리사주 대어 주선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
5.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

② 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그 밖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③ 대의원은 (직급)별로 조합원수 (10)명당 1명, 단수조합원이 (5)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원을 각 (직급)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 ①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 조합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한다.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조합의 재산 관리)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회사에 보관 또는 예치한다.

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회사, 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차입금
4.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제17조 제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인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분과 그 운용수익 상당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조합운영비) ①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제16조의 조합기금과 구분하여 조합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7조(우리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계정의 예탁 우리사주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남은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상환 및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조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차입규모 및 제3호의 차입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입금의 상환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 이상이 분할 상환되도록 회사 및 주주 등 상환 약정자와 서면에 의해 약정할 것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의 담보권 해지를 조건으로 해당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제5호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2.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 가.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 나. 회사·주주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 다. 조합원계정 및 조합계정 보유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
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한 취득

②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우리사주를 인수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취득 우리사주의 배분기준) ① 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 주식 등 우리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우리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 하되,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출연(회사 또는 관계회사 상환 약정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각각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은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 받는 주식의 배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환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우리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① 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계정에 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 조성일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제21조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에 배정한다.

③ 조합은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 즉시 해당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무상증자 주식

포함)를 상환일 현재 조합원계정에 배정한다. 이 경우 상환배정 전 조합계정 보유 우리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주식 배당을 포함한다)는 취득 후 최초의 상환 배정주식에 전량 합산하여 배정한다.

제21조(배정 우리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예탁기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우리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우리사주와 회수된 후 해당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1.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발생
3. 정년예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22조(우리사주의 예탁) ①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합원계정 예탁 우리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로서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무상증자 신주
2. 조합원계정에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2. 제16조 제1항 제1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4.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원계정에 배정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

④ 조합 또는 조합원은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우리사주 대여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⑤ 제22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22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①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이상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조합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22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장할 것

가. 의결권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배정받아 예탁한 우리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②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 ① 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우리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4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②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인 회사는 조합이 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④ 비상장법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이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3. 환매수 절차
4. 분할 환매수 방법
5.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합원은 제4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약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급성이 확보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분할하여 환매수 하는 도중에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⑨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⑩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⑪ 조합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합기금에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⑫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7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배당금 등) ① 조합은 조합원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 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제26조(회계처리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처리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 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

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③ 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각각 제출한다.

제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과 실사회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총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의무) 삭제(16.1.21.)

제32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회사의 해산
 4. 회사가 관계회사로서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거나 부여 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에 대하여 조합 존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우리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제19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 ① 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 받도록 한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